#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토스뱅크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와 고객이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바일앱(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스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은 언제든지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 예금 거래에 적용합니다.

# 제2조 (실명거래)

- ①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합니다.

#### 제3조(거래방법)

고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실사용자로 등록된 법인명의 스마트폰 포함)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하여 모든 예금거래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센터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자적 장치"라 합니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전자서명, 비밀번호 등의 신고)

- ① 고객은 거래를 시작할 때 전자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휴대폰번호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치식, 적립식 또는 연결계좌를 통해 신규한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5조 (입금)

- ① 고객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계좌송금(고객이 모바일앱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모바일앱 또는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고객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고객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 ③ 자기앞수표를 입금할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 제6조 (예금이 되는 시기)

- ① 제5조에 따라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 계좌이체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됩니다.
- ②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자기앞수표의 부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 되었을 때에는 은행은 그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해당 은행의 부도어음 통보에 따라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해당 은행으로 반환처리하며, 고객(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이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통화불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8조 (이자)

-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6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합니다.
-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④ 고객이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제9조 (휴면예금 및 출연)

-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합니다)으로 봅니다.
  -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합니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 제10조 (지급,해지청구)

- ① 고객이 예금,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입력하고, 전자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자동이체, 전자적 장치, 바이오정보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1조 (지급시기)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고객이 찾을 때 지급합니다.
- ②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이후 고객이 요청할 때 지급합니다.

#### 제12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합니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취합니다.
-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 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지급정지 이의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⑤ 고객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 ① 은행은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⑧ 이 조의 금융사고 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13조 (양도 및 질권설정)

- ① 고객이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 ① 고객은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 등을 분실, 도난, 멸실, 훼손했을 때는 곧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전자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고객 본인이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제15조 (모바일앱 재등록,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모바일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또는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고객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합니다.

####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화자가 고객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고객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고객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고객이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7조 (면책)

- ① 은행은 모바일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고객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신고서, 위임장 등을 제출받는 경우 해당 서류에 찍힌 인감 또는 서명이 인감증명서에 따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따른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그 외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을 위하여 입력 또는 제출받은 정보가 사전 신고된 고객의 정보와 동일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모바일앱 및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이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④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한 계좌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고객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고객이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수수료)

- ①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고객이 제신고, 부가서비스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제19조 (오류처리 등)

-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계좌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20조 (예금의 비밀보장)

-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고객이 전자적 장치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1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모바일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호 중 1개(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고객에게 알립니다.
- 1. 고객이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 2. 고객이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고객이 사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 3. 고객과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 4. 거래통장에 표기
- 5.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
-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수한 문구 변경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 ⑤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22조 (약관적용의 순서)

- ① 은행과 고객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 약관을 먼저 적용합니다.

# 제23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토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합니다.

### 제24조 (이의제기)

고객은 은행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3층 | 고객센터 1661-7654 | 사업자번호 462-86-01671

